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0507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민법 제1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05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가단43573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A 담당변호사 성BA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홍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거DA식품(이하 ‘거DA식품’이라고만 한다)은 2001. 10. 31. 피고로부터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02. 10. 30.,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예정금액 3억 원,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TJD-2001-01796, 이하 ‘구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01. 11. 12. 원고와 사이에 약정 한도금액 3억 원, 거래기간 2002. 10. 30.까지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2002. 10. 11.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3. 2. 28.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거DA식품은 위 구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만료된 후인 2002. 11. 15. 피고로부터 구 보증서와 내용은 같되 보증기한을 2003. 10. 31.로 하는 새로운 신용보증서(TJD-2002-04056,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02. 11. 18. 원고와 사이에 앞서의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간을 2003. 10.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3. 2. 12.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3. 3. 14.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2003. 5. 2. 피고에 대하여 보증원리금 257,365,328{원금 255,000,000($300,000,000 \times 85/100$) + 이자 2,365,328}원의 지급을 구한 사실, 피고는 2003. 9. 8.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청구된 대출원리금 중 위 2002. 10. 11.자 대출에 따른 원리금 85,918,419(원금 $100,000,000 \times 85/100$ + 이자 918,419)원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이면약관에는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앞면 특약사항란에 제2항으로 “구 보증서 TJD-2001-01796에 의하여 신CA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 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하며(이하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이라고 한다), 이면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60일이 경과하여 본 보증서에 의해 최초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신규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이하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근보증의 경우 갹신보증으로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을 부가하는 것이 조화롭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양자가 본질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로서는 개별약정을 통해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계약내용에 편입시켜 근보증에 있어 보증기한 연장이 갖는 의미를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의 취지를 갹신보증의 경우에도 관철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와 같이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 추가된 경우에는 통상의 신규보증의 경우와 같이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신 보증서에 따른 신용보증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은 위 특약에 위반되었으므로, 위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보증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는 신CA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할 때에 있어서의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당시보다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인 신CA기금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의 신용상태가 유지되리라고 보이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성립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은 보증기간 전체에 관하여 파악되는 것이지 개개의 특정 채무의 발생시점 별로 개별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대출 중 비록 소액이더라도 최초의 대출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실행되지만

하면 그 이후 약정 보증기간 동안 실행되는 대출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을 묻지 않고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참조), 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보증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구 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이른바 갱신보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보증의 보증기간 연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갱신보증서 발급 당시 남아있는 기존 채무도 갱신보증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채무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 제28조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갱신보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253 판결 참조).

따라서 근보증의 갱신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관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을 보증서 특약사항란에 기재함으로써 그 적용을 강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로 인하여 근보증에 있어서 갱신보증의 본질적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 근보증에 있어서 위 법 규정의 적용 한계, 갱신보증과 구 보증 사이의 관계, 갱신보증에 있어서 위 법 규정 및 약관 조항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위 특약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보증과 갱신보증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갱신보증서 발급 당시 구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채무가 남아있고 갱신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한도거래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신 한도거래약정이 체결되면 그와 동시에 갱신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존재하는 셈이어서 결국 위 특약에서 요구하는 최초대출이 실행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보증인 구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에 불과한 이 사건 신용보증의 경우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구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도 남아 있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한도거래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신 한도거래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이 사건 대출이 갱신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경과하여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출이 피고기금의 면책요건인 위 특약소정의 ‘60일이 경과하여 본 보증서에 의해 최초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로서는 보증기간 내에 실행된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갱신보증인 이 사건 신용보증에 위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보증의 경우와 같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별도의

건별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갱신보증의 성격 및 갱신보증과 구 보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